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77

발의연월일: 2021. 2. 2.

발 의 자: 김철민·강득구·김민철

박찬대 • 서동용 • 안민석

윤후덕 • 이병훈 • 이용빈

이정문 • 정청래 의원

(11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,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.

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. 학교법인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추후 다시 이사로 선임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조속히

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.

이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(안 제25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6항 중 "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"을 "운영경비,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임시이사의 선임) ① ~	제25조(임시이사의 선임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	6
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	
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	운영경비,
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	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
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	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
다.	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
	용을